

2025년도 『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』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, 농림축산식품부, 중소기업중앙회,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·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1일
중소기업중앙회장

◆ 본 공고는 식품업 고도화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중앙회/삼성이 중소·중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

I. 사업목적

- 식품 가공업 분야의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II. 사업 지원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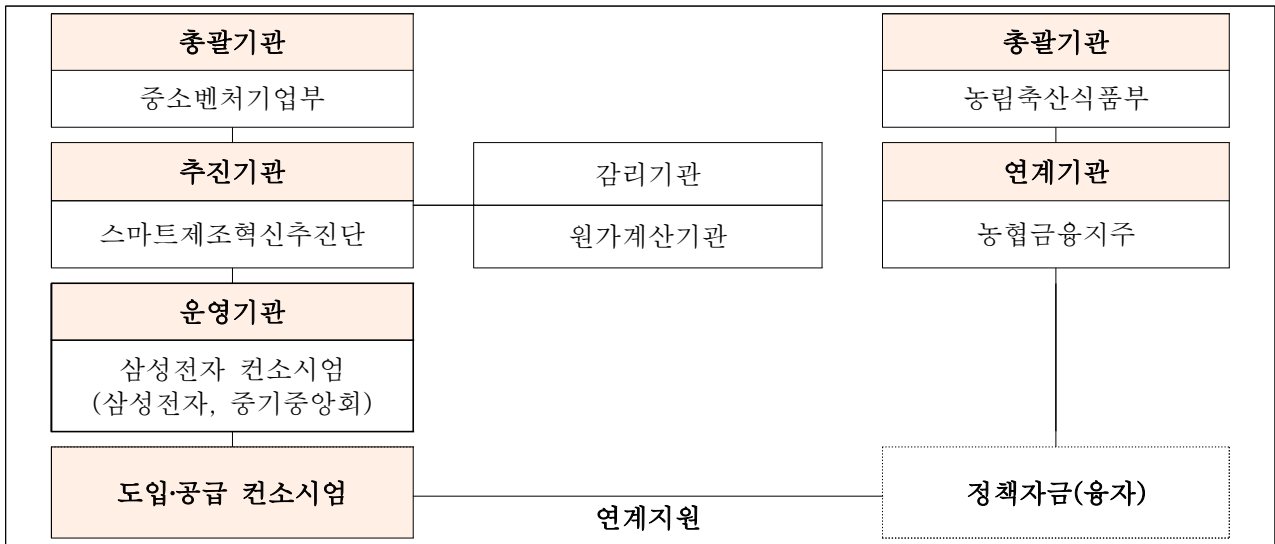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□ 지원규모 : 총 15개사 내외

- 스마트화 수준 중간 1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
* 단,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추진체계



☐ 지원예산 : 총 30억원

☐ 고도화(중간1 이상 신규 구축)

- 제조현장 혁신 [삼성전자 전문인력(멘토) 별도 지원]
 - 기본 갖추기(제조혁신 마인드 제고, 5S3정, 품질/생산성 향상 등)
 - 물류/자재관리, 지그/대차 제작 지원 등(사업비 내 비용반영 가능)
- 운영시스템·자동화 구축(ICT 연계)
 - 공장운영시스템(MES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
 -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, 공정시뮬레이션 등

【세부 지원내용】

분 야		내 용
제조현장 혁신		- 제조혁신 교육, 5S(정리/정돈/청소/청결/습관화) 3정(정품/정량/정위치) 지도 - 설비관리, 환경안전 분야, 품질/생산성 향상 지원 - 현장개선 필요 기구물 제작 - 공장 Layout 최적화, 제조물류, 창고관리 등 제조 노하우 전수
운영 시스템 구축	공장운영시스템(MES)	- 제조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-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
	기업자원 관리시스템(ERP)	-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-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

분 야		내 용
자 동 화	공급사슬 관리시스템(SCM)	- 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-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
	제품개발지원 시스템(PLM)	-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
	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(FEMS)	-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/계측장비/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
	제조자동화	- 저비용·고효율 제조 로봇(무인운반차 등) 개발·보급 - IoT센서,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- ICT연계 조건
	공정시뮬레이션	- 공장·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-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,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
	초정밀금형	- 금속 소재의 정밀설계, 가공,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 - 도장, 코팅, 연마 등 공정 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 - ICT연계 조건

□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

◦ 인력 양성 지원

-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주관, 개발/품질/제조/판매 등 직무별 특화교육
-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, 스마트팩토리 유지/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
-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지원

◦ 신기술 접목 지원

-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
- 우수기술 설명회 실시 (특허청 연계)

◦ 판로 개척 지원

-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, 국내·외 바이어 발굴/매칭
- 제품 전시회, 구매상담회 등 개최
- 무역협회 TradeKorea,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

□ 지원조건

【유형별 지원내용】

구 분	유형1
지원대상	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
지원규모	최대 2억원 (총 사업비 50% 지원)
지원비율	정부 : 도입기업 5 : 5 매칭

- * 수준 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
- *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
- *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- * 사업기간 : 최대 9개월,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(H/W 문제 6개월) 연장가능
- *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
□ 신청자격

- 도입기업 :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-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
- 공급기업
 - 운영시스템 :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
[외산 S/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(Customization)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]
 - 제조자동화 :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
- *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의 공급기업 풀(Pool)에 등록하여야함(필수사항)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◦ 사업계획서

- 접수기간 [2025. 8. 11(월)부터 접수 가능]

* 2025. 9. 12(금)까지 신청 마감

* 현장실사 : 2025. 8. 25(월)부터 진행

※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
조기 마감 등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◦ 신청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
-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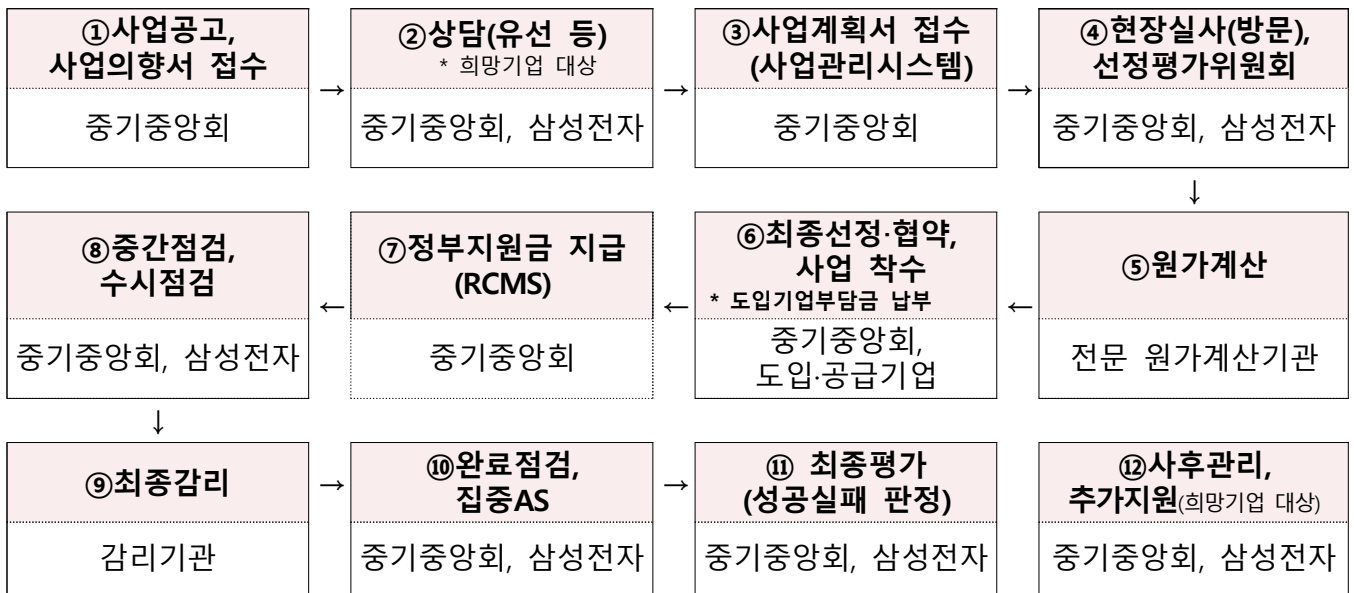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온라인 신청(제출
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
필요(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)

◦ (제출서류)

구분	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(온라인 제출) *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
1	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
2	도입기업,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(유효기간 이내) 각1부
3	도입기업(구축 공장)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) ※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
4	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(유효기간 이내)
5	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(유효기간 이내)
6	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/공급기업 대표자, 담당자 각 1부 (총 4부)
7	FP(기능점수) 산정자료

□ 지원절차



* 정부 감리지침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최종 감리 실시

** 집중 A/S(6개월) 후 최종 완료 평가 실시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(현장실사) 사업계획서와 도입기업 현장의 연계성 평가
 -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2회 진행
 - * 상황에 따라 1회만 진행 가능 **1차 현장실사, 2차 수준 진단
 - 현장실사 중 보완 사항 발생 시 보완 확인을 위한 재평가 실시
- 선정평가위원회
 - 현장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도입기업 선정
 - * 부적격시 1회 보완조치 기회부여 (후순위 배정)
- 원가계산
 -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
- 우대사항 : 각 항목별 3 ~ 5점 부여(중복시 최대 5점)
 - 우대사항은 신청 시 해당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항목	세부내용	비고
취약지역·계층	- 위기지역 소재기업 · 정부/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(인구감소지역,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) - 사회적기업 - 여성CEO 기업	· 해당부처, 지자체 발급 확인서 또는 선포/고시문(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등) · 사회적기업 인증서 · 여성기업 확인서
장애인기업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	· 장애인기업확인서
뿌리기업	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	· 뿌리기업확인서 ※ 소기업 한정
일터혁신컨설팅	2025년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☞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: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일터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 (문의 : 노사발전재단 02-6021-1167, 1176)	· '25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협약서
FEMS 솔루션 도입	에너지관리공단의 FEMS 또는 ESCO 솔루션 도입기업(과제수행 진행/완료 증빙)	· 주관기관 선정 공문 · 주관기관 완료 공문
글로벌 강소기업	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	·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

◦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‘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’을 수행 중인 기업.

* 정부일반형,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(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'25년 사업신청 가능)

** 단,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	
*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하며,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	

□ 도입기업부담금 납부

- 최종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-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최소 50%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나머지 잔금은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도입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기업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관,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(최대 14일 이내)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※ 기타 사업착수 및 지원금 지급절차는 「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기준」 제26조에 따른다.

□ 기타사항

- 지정회계법인이 과제별 RCMS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
-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사업비 중 '기타비용'에 편성 필요

< 회계정산 수수료 >

구 분 (총사업비 규모)	표준수수료	비고
50백만원 이하	500천원	부가세 포함
200백만원 이하	700천원	
400백만원 이하	1,000천원	
400백만원 초과	1,300천원	

* 정산대상 사업비 :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

-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
- 사업완료는 정부 기준에 따른 수준확인이 선행되어야 함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도입기업에 지급함
- 총 사업비 중 상기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
- 정부정책에 따라 본사업의 지원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
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
-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·공급기업은 사업종료 전 아래의 스마트공장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며 추가로 삼성전자에서 실시하는 ESG0 교육 과정 수료(권장)

구분	세부내용
①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, 공급기업(대표, 실무자)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, RCMS 사용법 등 *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, 사업 중간보고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및 연락처 : [붙임2 확인]
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	- 대상 : 도입기업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1, 2 확인]

-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.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 가능
 - * 구체적인 방법은 중기부 가이드라인 통해 안내 예정
-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 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. 단,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 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
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·평가항목* 예외 인정
 - *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
- 단, 공장설립(계획)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

III. 문의 및 연락처

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(02-2124-4371~3, smart@kbiz.or.kr)

* 빠르고 명확한 답변 위한 스마트한 상담창구 :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한 상담

①친구 기본화면에서 돋보기 클릭 ②검색창에 '스마트공장지원실' 입력 ③스마트공장지원실 "친구추가" ④상담화면에 문의사항 입력



붙임 1**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**

- (교육 기관)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)
- (교육 장소)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,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
- (교육 기간) 연중 운영(1~12월)
- (교육 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
- (교육 비용) 무료 또는 유료
- (신청 방법) 연수원 홈페이지(<http://ssup.kosmes.or.kr>)를 통해 신청

※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

【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】

운영과정 구분	연수원명	전화번호
집합교육 웹비나(Webinar) 장기심화과정	중소벤처기업연수원 (경기도 안산)	031-490-1472
	호남연수원 (광주)	062-250-3000
	대구경북연수원 (경북 경산)	053-819-5001
	부산경남연수원 (경남 창원)	055-548-8045
	충청연수원 (충남 천안)	041-559-9225
온라인 교육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	031-490-1288

붙임 2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

- (교육기관)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(삼성, 한국산업인력공단)
- (교육장소)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,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
- (교육기간) 연중 운영(1~12월)
-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
- (교육비용) 무료(단,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일부 비용 발생)
- (신청방법)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→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→ 신청
※ 세부 월별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
- (신청문의) 김정섭위원(054-470-2704, jsub.kim@samsung.com)
- (교육과정) 총 32과정 운영

경영자	스마트팩토리 추진리더 (임원급 인력) 스마트공장 추진방향, 추진사례, 우수업체 벤치마킹			
중간관리자	현장혁신리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, 제조원가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	스마트팩토리 우수기업 현장학습 스마트공장 기 구축한 우수기업 현장 학습 기회의 장 마련		
실무자	공장 운영시스템 (6과정)	공정 시뮬레이션 (3과정)	제조 자동화 (7과정)	초정밀 가공 (1과정)
	현장혁신(12과정) 스마트팩토리 마스트 / 현장혁신기본 / SPS 이해 / 낭비개선 / 공정개선 / PRO-3M / 제조물류 / 품질혁신 / 자재관리 / 품질관리 / 생산관리 / 스마트팩토리 구축기법			